

부속서 II  
콜롬비아의 유보목록

분    야	특정 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9.4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콜롬비아는 다음 분야에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조사 및 경비 서비스</p> <p>나. 연구 및 개발 서비스</p> <p>다. 보편적 서비스 보장을 위해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에 적용되는 배타적 영역의 설정</p> <p>라. <i>Constitución Política de Colombia</i> 제336조에 따라 그 수익이 공공 또는 사회 서비스에 전적으로 활용되는, 정부가 독점을 설정한 분야의 유통, 도매 및 소매 서비스.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콜롬비아는 오직 주류 및 도박과 관련하여서만 독점을 가진다.</p> <p>마. 초등 및 중등 교육 서비스, 그리고 고등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실체의 구체적 유형에 관한 요건</p> <p>바.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 또는 유지되는 환경 서비스</p> <p>사. 보건관련 및 사회 서비스, 그리고 보건관련 전문직 서비스</p> <p>아.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p> <p>자.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p> <p>차.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파이프라인 운송 서비스, 모든 형태의 운송 보조 서비스, 그리고 기타 운송 서비스를 위한 영업허가의 수 및 총 영업의 수</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GATS 제16조에 따른 콜롬비아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유보내용

투자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의 국경 지역, 국내 해안 또는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의 목적상,

가. **국경 지역**이란 국경선과 평행한 2킬로미터 너비의 구역을 말한다.

나. **국내 해안**이란 최고만조선과 평행한 2킬로미터 너비의 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다. **도서 지역**이란 콜롬비아 영역의 일부인 섬, 아주 작은 섬, 산호초, 갯 그리고 여울을 말한다.

분 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 8.4 조 및 제 9.3 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콜롬비아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수산, 그리고

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분 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한도에서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사회 재적응,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사회 복지, 공공 훈련 및 공교육, 보건, 그리고 보육.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콜롬비아의 사회 보장 제도 (*Sistema de Seguridad Social Integral*)는 현재 다음의 의무적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Sistema General de Pensiones*), 의료보험(*Sistema General de Seguridad Social en Salud*), 산업재해보상(*Sistema General de Riesgos Profesionales*), 그리고 퇴직금(*Régimen de Cesantía y Auxilio de Cesantía*).

분 야 소수 집단 및 소수 민족 집단 관련 사안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이행요건(제8.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8.10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Constitución Política de Colombia* 제 63조에 따라 소수 민족 집단이 보유한 공유지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 집단 및 소수 민족 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콜롬비아의 소수 민족 집단은: 토착민 및 집시(*gypsy*), 아프리카-콜롬비아인 공동체, 그리고 산 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및 산따까탈리나 군도의 라이잘 공동체이다.

분 야

문화 산업 및 활동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최혜국대우(제8.4조 및 제9.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문화 산업 및 활동”이란 용어는 다음을 말한다.

가. 도서,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인쇄된 신문이나 전자 신문의 발행, 배포 또는 판매. 다만, 전술된 것들의 인쇄 및 조판은 제외한다.

나. 영화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형식의 음악 녹음물의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상영

라. 공연 예술의 제작 및 상연

마. 시각 예술의 제작 및 전시

바. 인쇄된 악보 또는 기계가 판독 가능한 악보의 제작, 배포, 또는 판매

사. 수공예품의 디자인, 제작, 배포 및 판매

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라디오·텔레비전 및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관련 활동, 위성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방송망, 또는

자. 광고 콘텐츠의 디자인 및 제작

콜롬비아는 문화 협력 또는 문화 산업 및 활동에서의 공동 제작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담고 있는 콜롬비아와 다른 국가 간 협정에 따라 그 다른 국가의 인을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콜롬비아는 시청각, 출판 또는 음악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콜롬비아 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그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분 야

보석 디자인  
공연 예술  
음악  
시각 예술  
시청각  
출판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내국민대우(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보석 디자인, 공연 예술, 음악, 시각 예술, 시청각 및 출판의 발전 및 제작을 위한 정부 지원<sup>1</sup>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해, 수령인이 국내 창작 콘텐츠의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광고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행요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과 합치한다.

---

<sup>1</sup> 이 유보안의 목적상, “정부 지원”이란, 민간 단체가 정부 지원의 관리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 혜택, 의무기여금 경감 혜택, 정부 보조금, 정부 지원 용자,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 신탁 또는 보험을 말한다.

분 야

수공예 산업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내국민대우(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산 수공예품으로 확인되는 수공예품의 디자인, 유통, 소매 또는 전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요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과 합치한다.

분 야

시청각서비스  
광고

관련의무

이행요건 (제8.9조)  
내국민대우 (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상저작물

가. 콜롬비아는 연간 기준으로 콜롬비아 내에 있는 영화상 영관 또는 상영실에서 상영되는 총영상저작물의 특정 비율(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콜롬비아산 영상저작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비율을 설정할 때, 콜롬비아는 국내 영상저작물 제작 여건, 국내 의 기존 상영 시설 여건 및 평균 관객 수를 고려한다.

공중과 텔레비전 방송상의 영상저작물

나. 콜롬비아는 연간 기준으로 공중과 텔레비전 방송 채널 에서 상영되는 총영상저작물의 특정 비율(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콜롬비아산 영상저작물로 구성 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 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비율을 설정할 때, 콜롬비아는 공중과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국내 영상저작물이 확보 가능한지를 고려한다. 그러한 작품은 부속서I의 22 및 23페이지상 5번째 문단의 공중과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각 제작 서비스에 관한 유보항목에 기술된 대로 채널에 적용되는 국산 콘텐츠 요건의 계산에 포함될 것이다.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sup>2</sup>

다. 콜롬비아는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의 주간 프로그램의 특정 비율(주당 56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공동 체 텔레비전 방송 운영자에 의해 제작된 국내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 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중채널 공중과 상업 텔레비전 방송

<sup>2</sup> 1999 년 Acuerdo 006 에 정의된 대로.

라. 콜롬비아는 부속서 I의 22 및 23페이지상 5번째 문단의 공중과 텔레비전 방송 및 시청각 제작 서비스에 관한 유보항목에 기재된 최소 프로그램 요건을 다중채널 공중과 상업 텔레비전 방송에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요건은 개별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2개 채널 또는 총 채널 수의 25 퍼센트(둘 중 더 큰 쪽)를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다.

#### 광고

마. 콜롬비아는 본부가 콜롬비아 외부에 있는 신문, 일간지 및 구독 서비스는 제외하고, 콜롬비아에 설립된 미디어 서비스 회사가 매년 수주하는 총 광고의 특정 비율(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이 콜롬비아에서 제작되고 만들어질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1) 개봉 예정인 영화에 대한 영화상영관 및 상영실에서의 광고, 그리고 (2)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콜롬비아 외부에서 유래하는 모든 미디어 또는 콜롬비아 내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재방송 또는 재전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전통적 표현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는 2005년 *Resolución No. 0168*에 따라 공표된 무형 문화 유산과 관련된 표현의 지원 및 개발에 관하여 지역 공동체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어떠한 조치도 제15장(지식재산권)과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분 야 양방향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8.9조)  
내국민대우(제9.2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 시청각 콘텐츠가 콜롬비아 소비자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콜롬비아 정부가 판단할 때,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소비자들이 양방향 오디오 및/또는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콜롬비아 시청각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거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위 문단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모든 조치는 제18장(투명성)의 규정과, 적용가능한 경우 제9.8조(규정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에 따라 시행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여야 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9.2조)  
최혜국대우(제9.3조)  
시장접근(제9.4조)  
현지주재(제9.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콜롬비아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인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영업하는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전문직을 영업하기 위한 관련 허가, 면허 또는 인증 요건을 달리 만족하는 콜롬비아 국민에게 이 유보항목에 언급된 의무와 합치하는 대우를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콜롬비아의 영역에서 콜롬비아 법에 따라 영업을 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기존의 법에 따라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영업하는 당사국은 그 전문직 종사자가 영업 면허를 받았고 직전 12개월간 가장 빈번하게 실제로 영업하였던 영역이다.

이 조치는 전문직 학위 상호 인정에 관하여 시행 중에 있는 양자협정을 콜롬비아와 체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도로 및 하천 운송
관련의무	최혜국대우(제9.3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는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도로 및 하천 운송 서비스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분 야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8.3조 및 제9.2조) 시장접근(제 9.4 조) 현지주재(제 9.5 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콜롬비아는 운송업자가 여행사 및 중개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커미션 및/또는 지불금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